

“법은 정신적·문화적 노력의 결정체”

「韓國法思想史」 최초로 펴낸 崔鐘庫 교수

간혹 서초동을 지나다 보는 위풍당당한 법원건물은 어떤 쓸쓸함을 느끼게 한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해조정을 위한 시금석이라는 법의 교과서적 의미는 실종되고, 잦은 법정소란이 증명하듯 멀쩡한 허우대만으로 법의 권위를 내세우기엔 현실감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위압감마저 주는 법원건물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의 수심어린 그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상재된 崔鐘庫교수(41·서울대 법대)의 「韓國法思想史」(서울대학교 출판부)가 갖는 각별한 의미는 이 분야 최초의 저서라는 ‘길타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상사와 法史라는 두개의 렌즈로 만든 쌍안경을 통해 우리민족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성과 정의를 향한 발자취”를 찾아내어, 전환기의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뒤흔들리는 법의 좌표를 올곧게 세우고자 한 저자의 열정이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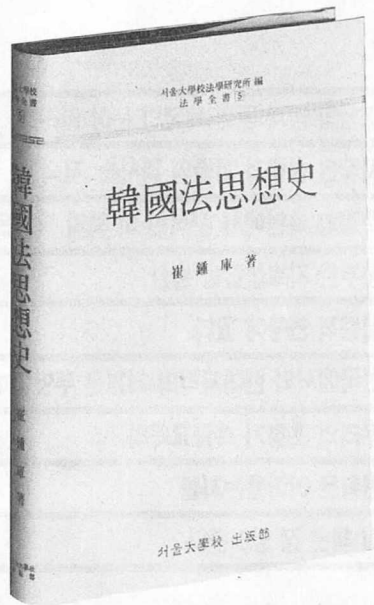
우리 법사상은 ‘검손의 덕’

“개화기 이후 서양의 법제를 수용하면서 통치원리를 법치주의로 내세웠지만 작금의 법에 대한 인식은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정치만의 산물이거나 그 시너일 수 없는 것이며 면면히 이어오는 사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사상이 사회에서 존중되고 있을 때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해방 이후 우리 법학은 양적인 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는 ‘수험법학’(司試)만이 득세하는 파행적인 것이었다. 반면, 기초법학으로서 법사상, 법철학, 법제사, 법인류학 등의 연구성과가 극히 미비했음을 지적하는 崔교수는 법사상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법사상사 전반의 과제를 후학들에게 설정해 주기 위해 고조선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를” 통사로 서술했다.

“법사상사는 법이 단순히 기술적인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노력을 총집결한 결정체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법사상사를 살펴보면 개화기를 중심으로 법사상의 단절과 연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화기 이전의 법사상은 중국의 법제도와 유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 형성된다. 법전이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지배계층은 법제정에 민중의 참여



를 철저히 통제했다. 개화기 이후는 서양 법사상을 수용하면서 법의 근대화를 가져왔고 전통적인 법제도와 크게 다른 양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서양 법사상의 유입과정에서 앞서 지적된 전통의 연속과 단절이 함께 자리잡게 되는데,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제도와 결별하였지만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운영하는 정신적 배경은 전통적 법사상에 쫓음을 대고 있다는 것이 崔교수의 말이다.

우리의 전통적 법사상을 한마디로 ‘검손의 덕’이라고 말하는 崔교수는 이 사상을 서구적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양의 법사상은 ‘권리의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발상법으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권리관념이 희박, 온정주의 차원으로 치우쳐 합리성의 부재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검손의 덕에 의한 권리관념의 희박은 왕을 포함한 지배집단도 법 아래 서있게 함으로써 법의 남용을 방지했다. 물론 부정적인 결과도 낳았는데, 법에 민중의 의사가 반영될 회로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법이란 명령된 것으로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여기게 된 점이다.

법사상사를 비롯, 사적 고찰을 해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 전체적 맥락을 지탱해 주는 주춧돌은 史觀이다. 인접학문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과 구체적인 학문적 성과물을 주시하여 온 崔교수는 “이데올로기에 각색된 사관을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그간의 한국사 연구방향이 편향된 운동사나 과거를 미화하는 국수주의적인 방향으로 양극단을 치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법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場에서 펼쳐진 법의 정신적 모색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이번 저술에서 사학자들의 성과를 충분히 원용한 사실을 밝히는 崔교수는 서구지향적인 현대법학의 지적 세례를 받은 학자로서 우리만의 특수한 법사상을 찾아내야 한다는 딜레마에 상당히 방황했다고 토로한다.

요즘 소장 법학자들 사이에 일고 있는 비판법학운동에도 崔교수는 관심을 나타낸다. 이런 운동의 발생론적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부정만을 하게 되면 미국의 경우처럼 ‘청소년적’ 파괴성향의 학자들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의 정신은 바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면서 崔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사시적인 시각에 색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어느 면에서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한을 사법부에 쏟아붓고 있는 인상입니다. 물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가지는 기대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활동은 분명히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법부는 그 법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민주적 악법 등 정치적 소산물을 원천봉쇄하는 힘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치인을 선택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죠.”

“성실한 학자는 많은 양의 글을 써야”

1947년 유학의 뿌리가 깊은 경북대생인 崔교수는 본래 철학도가 되고 싶었다고. 33담임선생의 강권으로 서울대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법학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한때는 轉科를 생각하기도 했다. 이때 신학과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고 폭넓은 독서편력을 갖게 되었다.

졸업무렵에 이르자 너무 의도를 한 것 같아 법대대학원에 진학하게 되고, 여기서 崔교수는 한 법철학자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라트브루흐. 독일의 위대한 법철학자의 저작집을 대하면서 갖게 된 지적 경악이 얼마나 컸는지는 崔교수가 번역한 라트브루흐의 「법철학」역자서문의 일부부분만 보더라도 쉽게 엿볼 수 있다.

“법학의 연구는 법의 과학만이 아니라 법의 철학 및 법의 종교철학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라트브루흐의 말을 스스로 인용하면서, 이



崔鐘庫교수

영똥한(?) 생각으로 한때 신학교에 적을 엮은 일까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라트브루흐는 역자에게 법의 테두리를 넘어 진한 고민을 하게한 유희자이기도 하였고, 그러면서도 끝내 법학을 버리지 못하게 붙들어준 학문적 은인이기도 하다.”

崔교수는 정력적인 집필활동을 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번역서를 제외한 저서만 해도 20권을 넘어서고 있다.

“독일에 유학을 가보니 다른 무엇보다 학문적 성과의 양에 압도되었죠. 그리고 당시 세상을 떠난 하이데거의 저서가 80권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성실한 학자는 많은 양의 글을 써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짓기에 남다른 재주를 가져 전국규모의 글짓기대회를 휩쓸었던 저력이 있어 원고지를 메꾸는 일이 남달리 부담스럽지 않았고, 전공인 법사상사나 법사학 그 자체가 스토리 텔링이기 때문에 많은 저작이 가능했다고 한다.

강의와 연구시간에 쫓겨 한눈 팔 겨를 없는 崔교수는 정신적 안락감을 주는 취미로는 여행을 든다. 하지만 여행도 사실 취미라기보다는 崔교수가 갖고 있는 팔방미인적의 문화적 관심을 나타내 줄 뿐이다. 얼마전 유럽여행 중에도 각국에 산재한 ‘법의 여신상’을 필름에 담아왔고, 남달리 분묘제도에 관심이 많아 아름다운(?) 공동묘지 사진을 찍어 왔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인 법사상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법학의 대중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동안 법률신문에 100회를 연재한 法史餘瀝’을 한데 묶어 곧 펴낼 계획. <이권우>